

■ 목 차

■ 소식 ■

이란 사무소 개설 3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를 대리하여 에머슨퍼시픽의 외자유치시 1,806억 규모의 제3자배정
 신주 인수 자문 5
 한국 금융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 관련 계약 검토 자문 6
 한국 하수슬러지처리업체를 대리하여 중국업체의 증자 참여 프로젝트 자문 6
 한국 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에서의 상표이의 절차 대행 7
 한국투자기업 경영지원 Q&A 사례집 용역 수행 7
 상해 한국인 학교 정기 법률자문 8
 한국인 실질 주주가 보유하는 중국회사에 대한 지분양수도 프로젝트 자문 9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산동성 합자프로젝트 자문 9
[베트남]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를 대리하여 베트남 대표법인 설립, 포스코 에너지의 출자 및
 본점 이전 자문 11
 신세계푸드를 대리하여 스무디킹 코리아의 한국 및 베트남 사업권 인수 자문 12
[캄보디아] Phnom Penh Autonomous Port(프놈펜항만공사) 상장 자문 13
 캄보디아 IT 서비스 기업 KOSIGN 증자 14
 이지글로벌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홈쇼핑업체 지분 인수 자문 14
 캄보디아 프놈펜 타워 보유 목적 설립 법인 현지인 주주 교체 자문 15
[미얀마]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CJ대한통운과 미얀마 국영 물류기업인 육상운송청(Road Transport)의
 현지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 16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최고인민법원 보험법 관련 제3차 사법해석 발표 17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시행령 제정 19
[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 발전 계획 발표 23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중국, WTO '무역 편의화 협정' 의정서 수용 결정 27
 국무원, 금융리스업 정책 완화..... 27
 중국 위생 및 계획출산위원회, 병원 등급별 진료제도 5년 내에 전면 구축 시사..... 28
 국무원,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 발표..... 28
[캄보디아] 2016년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PRAKAS on Determination of Minimum Wage for Workers/Employees in the Textile, Garment and Footwear Industries in 2016) 제정 29
[일본] 일본정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책대강 결정..... 30

■ 소식 ■

이란 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로펌 최초로 이란 법률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평은 2015년 11월 4일 테헤란에서 이란의 유력로펌인 Gheidi & Associates('게이디')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란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지평 이란 사무소장은 작년부터 두바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지영 변호사(서울법대, 사법연수원 38기)가 맡고 있습니다. 배변호사는 한국이슬람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이슬람법 전공으로 법학석사를 취득한 중동전문가입니다.

지평이 제휴한 Gheidi & Associates는 유명한 유럽계 및 아랍계 항공사, 한국 대기업을 비롯하여 이란에 진출하려는 대형 외국기업들을 자문하고 있는 이란 유력로펌으로, 대표인 Nasim Gheidi 변호사는 전문성과 고객중심서비스로 장기간 고객들로부터 신망을 쌓아왔습니다.

지평은 이란 사무소와 본사 중동·이란팀이 협력하여, 최근 경제제재 해제를 앞두고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이란 시장에 진출하려는 건설사, 상사, 에너지기업 등 한국기업들에게 이란 현지와 국내에서 동시에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평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8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업무 선두 로펌으로, 이란 사무소는 9번째 해외지사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중동 · 이란팀 변호사 소개]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배지영 변호사 · 이란 사무소장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지평, 테헤란에 이란사무소 개설(2015. 11. 12.)
- 리걸타임즈 - 지평, 이란에 현지사무소 열어(2015. 11. 13.)
- 한국경제 - [Law&Biz] 지평, 국내 첫 이란 사무소 개설(2015. 11. 10.)
- 매일경제 - 법무법인 지평, 이란 법률시장 진출(2015. 11. 10.)
- 세계일보 - 법무법인 지평, 이란에 해외사무소 개설(2015. 11. 10.)
- 뉴스토마토 - 법무법인 지평, 국내 최초 이란 사무소 개소(2015. 11. 10.)
- 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한국 로펌 최초로 이란사무소 개설(2015. 11. 10.)

[관련 사진]



좌로부터 지평 배지영 변호사,
Nasim Gheidi 대표변호사,
지평 양영태 대표변호사와 이훈 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를 대리하여 에머슨퍼시픽의 외자유치시 1,806억 규모의 제3자배정 신주 인수 자문

지평은 에머슨퍼시픽의 외자유치시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를 대리하여 1,806억 규모의 제3자배정 신주 인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에머슨퍼시픽, 1800억 투자 유치...중국 최대 민간투자사가 2대 주주로\(2015. 11. 8.\)](#)

[담당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윤국정 변호사



정선열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경엄동 중국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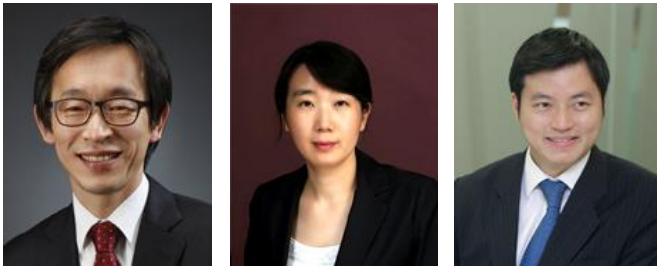


이상희 미국변호사

한국 금융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 관련 계약 검토 자문

지평은 한국의 금융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 관련 계약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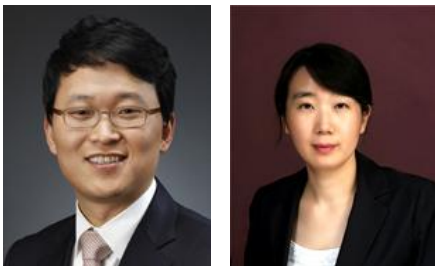


명한석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한국 하수슬러지처리업체를 대리하여 중국업체의 증자 참여 프로젝트 자문

지평은 한국 하수슬러지처리업체를 대리하여 중국업체의 증자 참여 프로젝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에서의 상표이의 절차 대행

지평은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에서의 상표이의 절차를 대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채광호 중국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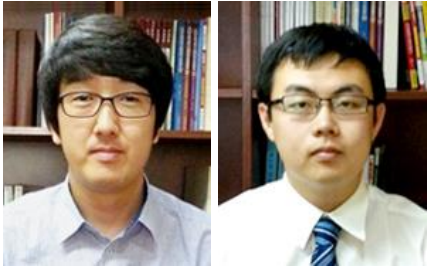
한국투자기업 경영지원 Q&A 사례집 용역 수행

지평은 코트라 충청대표처의 한국투자기업 경영지원 Q&A 사례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임호 중국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조준금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채광호 중국변호사 장욱염 중국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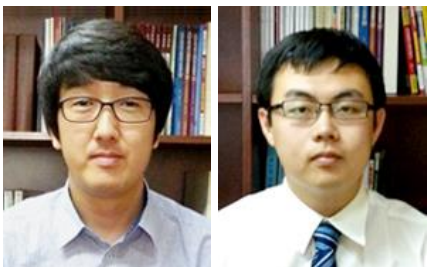
상해 한국인 학교 정기 법률자문

지평은 상해 한국인 학교에 정기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임호 중국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조준금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채광호 중국변호사 장욱염 중국변호사

한국인 실질 주주가 보유하는 중국회사에 대한 지분양수도 프로젝트 자문

지평은 한국인 실질 주주가 보유하는 중국회사에 대한 지분양수도 프로젝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채광호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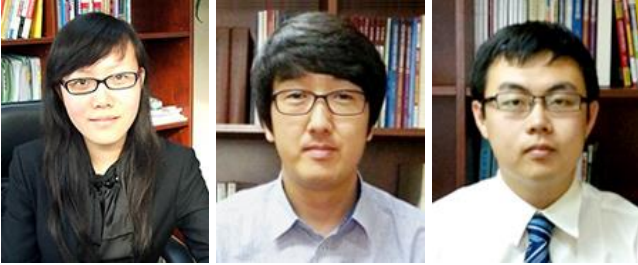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산동성 합자프로젝트 자문

지평은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산동성 합자프로젝트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임호 중국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조준금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부응 중국변호사 채광호 중국변호사 장욱엽 중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를 대리하여 베트남 대표법인 설립, 포스코 에너지의 출자 및 본점 이전 자문

지평은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를 대리하여 베트남 대표법인 설립, 포스코에너지의 출자 및 본점 이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더벨 - 포스코 베트남 대표법인 설립, 포스코에너지 동참\(2015. 7. 13.\)](#)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유동호 미국변호사

신세계푸드를 대리하여 스무디킹 코리아의 한국 및 베트남 사업권 인수 자문

지평은 신세계푸드를 대리하여 스무디킹 코리아의 한국 및 베트남 사업권을 인수하는 자문을 진행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신세계, 한국·베트남 스무디킹 인수(2015. 10. 9.)
- 매일경제 - 신세계푸드, 스무디킹코리아 지분인수 계약 체결(2015. 10. 8.)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이승수 변호사



정선열 변호사



박종완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Phnom Penh Autonomous Port(프놈펜항만공사) 상장 자문

지평은 Phnom Penh Autonomous Port(프놈펜항만공사)의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상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PAP는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세 번째로 상장된 기업으로, 캄보디아 공기업으로서는 지평이 자문한 캄보디아 제1호 상장기업인 PPWSA(프놈펜수도청)에 이어 두 번째 상장입니다.

[관련 기사]

- 파이낸셜뉴스 - 유안타증권 "자사 주관 캄보디아 프놈펜항만공사 현지 거래소 상장"(2015. 12. 10)
- 연합인포맥스 - 유안타증권 주관 캄보디아 3호 IPO 성공...프놈펜항만공사 상장(2015. 12. 10)
- 서울파이낸스 - 유안타증권 주관 프놈펜항만공사 현지 거래소 상장(2015. 12. 10.)
- 헤럴드경제 - 유안타증권 주관 캄보디아 3호 프놈펜항만공사 IPO(기업공개)(2015. 12. 10.)
- 머니투데이 - 유안타증권, 캄보디아거래소 3호 IPO 주관(2015. 12. 10.)
- 서울경제 - [증권가소식]유안타증권, 캄보디아 증시 3호 IPO 성공적 마무리(2015. 12. 10.)
- 이데일리 - 유안타증권, 캄보디아 현지 거래소 3호 IPO 성공적 상장(2015. 12. 10.)
- 연합뉴스 - 캄보디아 3번째 상장사 탄생...한국인이 뒷받침(2015. 12. 10.)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최정묵
미국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변호사

캄보디아 IT 서비스 기업 K.O.S.I.G.N 증자

지평은 캄보디아 IT 서비스 기업 K.O.S.I.G.N.에 증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 변호사

이지글로벌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홈쇼핑업체 지분 인수 자문

지평은 이지글로벌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홈쇼핑업체인 HANA TV HOME SHOPPING (CAMBODIA) Co., Ltd.의 지분 인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 변호사

캄보디아 프놈펜 타워 보유 목적 설립 법인 현지인 주주 교체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현대엔지니어링에 캄보디아 최고 오피스 건물인 프놈펜 타워 보유 목적 설립 법인의 현지인 주주 교체 및 관리·통제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 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미얀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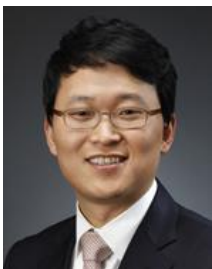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CJ대한통운과 미얀마 국영 물류기업인 육상운송청(Road Transport)의 현지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

지평 미얀마팀은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CJ대한통운과 미얀마 국영 물류기업인 육상운송청(Road Transport, RT)의 현지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아시아경제 - CJ대한통운, 미얀마 국영물류기업과 합작법인 설립\(2015. 11. 5.\)](#)
- [파이낸셜뉴스 - CJ대한통운, 미얀마 현지법인 본격 운영\(2015. 11. 5.\)](#)
- [머니투데이 - 대한통운, 미얀마 물류시장 공략 본격화...합작법인 출범\(2015. 11. 5.\)](#)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장성 수석자문위원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최고인민법원 보험법 관련 제3차 사법해석 발표



(법무법인 지평 장욱염 중국변호사)

11월 2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보험법 관련 사법해석 (3)'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생명보험계약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생명보험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보험이익이 존재하는지,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및 보험금 금액에 대하여 확인받았는지를 법원에서 능동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고지의무 면제 여부 및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신체검사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보험료 체납으로 효력이 중단된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효력 회복을 신청하고 체납 보험료의 납부에 동의한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효력 중단 기간에 피보험자의 위험 정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회복신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응대를 태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 수리 후 30 일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조항을 두었습니다.

4. 보험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 요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러한 지정 또는 변경은 무효라고 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수익자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에서 수익자에 대하여 성명 및 신분관계를 명시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서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수익자 판단기준을 다각도로 명시하였습니다.

5. 의료보험의 약관을 규범화하여 보험회사의 보증 리스크와 보험가입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균형 유지라는 기본원리를 더욱 충실하게 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사회의료보험 등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책정 시 이미 사회의료보험에 대응하는 요금을 공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해당 해석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같은 사고로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나 정확한 사망 순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시간의 추정 등 문제에 대하여도 자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투자법 및 기업법 시행령 제정



(법무법인 지평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종래의 법을 전면 개정한 투자법과 기업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지만, 그간 하위 법령이 전혀 입법되지 않음으로써 행정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여 많은 외국인 투자법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2015년 11월 12일 투자법 시행령(Decree 118/2015/ND-CP, 이하 '**Decree 118**')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업법의 하위 시행령으로는 2015년 10월 19일 기업법 중 몇몇 조항을 구체화한 Decree 96/2015/ND-CP(이하 '**Decree 96**')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 8일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업법 전반을 포괄하는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투자법과 기업법의 개정 내용 중 불명확하였던 사항으로 각 시행령에서 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법 시행령

(1) 조건부 사업분야

개정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조건부 사업분야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 지분율에 상관 없이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외에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조건부 사업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51% 이상일 경우에는 2가지 등록증을 모두 받아야 하고, 51% 미만일 경우에는 기업등록증만 받으면 됩니다.

Decree 118은 조건부 사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① 투자 지분율에 대한 조건
- ② 투자 형태에 대한 조건
- ③ 투자 규모에 대한 조건
- ④ 현지인 합작 파트너에 대한 조건
- ⑤ 기타 투자 관련 법령과 국제조약에서 정한 조건

위와 같은 유형의 조건들이 WTO 양허안 기타 국제조약이나 베트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베트남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서 사안별로 필요 조건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혜택 및 지원

투자법에 따라 투자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투자 우대 분야 및 특별 우대 분야
- ② 사회 - 경제적 낙후 분야 및 특별 낙후 분야
- ③ 총 투자 자본금이 베트남화 6조동 이상이고, 그 중 6조동 이상이 투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투자되는 프로젝트
- ④ 농어촌 지역에서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프로젝트(단시간 근로 및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근로 제외)
- ⑤ 첨단 기술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야

(3) 기존 투자허가서의 효력

투자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투자 및 설립 인허가 서류로는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투자법과 기업법은 이를 기업등록증과 투자등록증으로 이원화하였습니다.

투자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발급된 투자허가서는 개정법상의 투자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투자허가서를 투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허가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허가서를 반환하고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기업법 시행령

Decree 96은 기업법 제10조(사회적 기업), 제44조(인감), 제189조(모/자회사), 제208조(감독기관의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입니다. 그 중 외국인 투자법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

회사는 자유로이 인감의 수와 모양(인영), 크기, 내용, 잉크 색상, 사용 및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최소 1개의 인감을 가져야 하고, 인감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인감에는 기업등록번호와 상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그 외의 문자나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 개정 전에 설립된 회사는 기등록한 인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등록한 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새로운 인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새로운 인감을 만들 경우에는 기등록한 인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모/자회사

Decree 96은 개정 기업법의 모회사 및 자회사 관련 규정에서 '상호출자(Cross ownership)'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상호출자는 2개의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개정 기업법 발효 전에 상호출자 관계에 있었던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 지분을 양도할 수는 있으나, 보유 지분율을 늘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 해외업무 논단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 발전 계획 발표



(법무법인 지평 김형근 변호사 · 캄보디아 사무소장)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World Bank가 분류한 1인당 GDP 미화 4천 달러 수준의 중상위 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 경제에 있어 제조업 분야의 비중을 높이고, 농산물과 섬유 이외의 다른 제품의 수출을 늘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캄보디아의 산업 발전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 발전 계획의 구체적 내용

1) 외국인 투자 활성화 도모

캄보디아 정부는 보다 활발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과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개발위원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 절차를 더 간소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해 외국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2) 중소기업 육성

캄보디아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농가공 분야는 물론 IT 분야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캄보디아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며, 과학 분야에 있어 양질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3) 기업친화적 제도 수립

캄보디아 정부는 기업들이 수출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출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세금을 단순히 국가 재정의 재원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사분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동법 관련 분쟁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노동법원을 새로이 만들겠다고 합니다.

4)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캄보디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을 새로이 더 만드는 동시에 특별경제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와 수도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전시설과 수도공급원을 더 만들고,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 개발을 본격화하고, 호치민과 방콕까지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섬유, 봉제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특별경제구역이 더 개발되고 인프라가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섬유, 봉제업 뿐만 아니라 중공업 분야나 IT 분야에서도 캄보디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강화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대규모의 투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섬유, 봉제 이외 다른 제조업 분야에 대한 활발한 외국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은행업 진출

그 동안 캄보디아 금융의 중심은 은행 보다는 소액금융대출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s)이었고, 거의 대다수의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보다는 자기 자본에 바탕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산업 발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일반 국민이 저축한 예금에 바탕하여 중소기업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보다 선진화된 금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업 분야에 있어 보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인프라 산업에 대한 투자

캄보디아 정부가 인정하듯이 아직 캄보디아에는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전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발전소는 물론 송전시설의 확충에 대한 많은 투자를 유치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캄보디아에는 내전을 거치며 거의 대부분의 철도와 많은 도로가 유실되어 현재 철도가 운행되고 있지 않은데, 캄보디아 정부가 새로이 철도와 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유통, 운송업에 대한 투자

캄보디아 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방콕으로부터 호치민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놓인다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으로서 유통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캄보디아를 경유한 내륙 운송 물동량은 미미한 수준이나 고속도로와 철도의 확충을 통해 호치민에서 방콕을 연결하는 동서 노선이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항구에서 중국까지 이어지는 남북 노선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캄보디아를 경유한 내륙 운송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3. 결론

캄보디아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1인당 GDP 미화 4천 달러 수준의 중상위 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이상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World Bank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캄보디아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7.2%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캄보디아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캄보디아 정부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산업 발전 계획에 따른 경제 성장 목표가 절대 허황된 목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 발전 계획상의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을 잘 살피어 유망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중국, WTO '무역 편의화 협정' 의정서 수용 결정

지난 8월 국무원은 WTO '무역 편의화 협정' 의정서를 수용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8월 23일, 상무부의 고우후청(高虎城) 부장은 동아시아 경제무역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무역 편의화 협정'의 16번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WTO '무역 편의화 협정' 의정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참여한 첫 다변 화물무역협정입니다. 당해 의정서의 발효 및 시행은 중국의 항구 종합관리의 현대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주요 국가들의 무역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원, 금융리스업 정책 완화

9월 7일, 「금융리스업 발전을 가속화할 데 관한 국무원 사무청의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도의견에서는 자격요건을 간소화하여 금융리스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가 금융리스거래와 관련된 저당권, 질권 설정 등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도의견에서는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 보험, 신탁, 펀드 등 여러 유형의 금융기관이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리스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리스사는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리스사의 경우 주식 발행, 자산 유동화 등 기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도의견의 발표는 금융리스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절차 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위생 및 계획출산위원회, 병원 등급별 진료제도 5년 내에 전면 구축 시사

중국 위생 및 계획출산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원 등급별 진료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중국의 대형 의료기관은 장기환자의 포화상태로 진료난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소형 의료기관의 환자수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 등급별 진료제도를 점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진료체제로부터 병원 등급별 진료제도에 이르기까지의 안정적인 과도를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5년 내에 전면 구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수한 의료진을 소형 의료기관에 공급하여 소형 의료기관의 진료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증상에 상관없이 환자들이 상급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국무원,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 발표

최근, 국무원은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해당 제도의 총체적 요구, 주요 업무 및 부수적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란 국무원이 리스트 형식으로 중국 내에서 투자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업종, 분야, 업무 등을 열거한 것으로서, 각 지방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그에 따른 관리조치를 취하는 관리제도를 말합니다.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금지류와 제한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업종, 분야, 업무 등은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합니다.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는 '시범운영 후 점진적으로 보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5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2018년부터 전국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2016년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PRAKAS on Determination of Minimum Wage for Workers/Employees in the Textile, Garment and Footwear Industries in 2016) 제정

캄보디아 사회복지부가 2015년 10월 8일자로 '2016년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정은 2016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2016년 최저임금은 미화 140달러입니다. 당초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을 미화 160달러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다수의 외국계 투자자가 캄보디아에서의 철수를 고려한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위와 같이 최저임금이 미화 140달러에서 결정됨에 따라 일단 외국계 투자자에 의해 운영되는 기존 업체들이 철수하는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일본정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책대강 결정

일본정부는 지난 11월 25일 '종합적인 TPP관련 정책대강'을 결정하였습니다. 대강의 요지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적인 TPP관련 정책대강(안)**I. 기본적인 생각**

TPP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에 자유하고 공정한 '하나의 경제권'을 구축하는 도전적인 시도이다. 이 지역의 성장을 받아드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의 비장의 카드'로 한다. 본 정책대강은 TPP효과를 진정으로 일본의 경제재생(經濟再生), 지방창생(地方創生)에 직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TPP의 영향에 관한 일본국민의 불안을 불식하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

II. TPP 관련정책의 목표**1. TPP의 활용 촉진**

(1) 정중한 정보제공 및 상담체제의 정비

① TPP의 보급·계발

(목표) 세미나·설명회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만족도 60% 이상을 목표로 한다.

② 중견·중소기업 등을 위한 상담체제의 정비

(목표) 상담창구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만족도 60% 이상을 목표로 한다.

- (2) 새로운 시장개척,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구축지원
- ① 중견·중소기업 등 신시장개척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의 발본적 강화
(목표) 종합적인 지원의 대상기업이 시장개척·사업확대성공률 60% 이상을 목표로 한다.
 - ② 콘텐츠, 서비스, 기술 등의 수출 촉진
(목표) 2020년까지 약 200억 엔의 방송 콘텐츠 관련 해외시장 매출액을 목표로 한다.
 - ③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의 전략적 추진
(목표) 2020년의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 1조 엔 목표를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한다.
 - ④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 촉진
(목표) 2020년에 약 30조 엔 인프라시스템의 수주를 목표로 한다.
 - ⑤ 해외전개처 비즈니스 환경정비

2. TPP를 통한 '강한 경제'의 실현

- (1) TPP에 의한 무역·투자의 확대를 국내 경제재생에 직결시키는 대책
 - ① 인노베이션, 기업간·산업간 연계에 의한 생산성 향상 촉진
(목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혁신을 낳는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2020년에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2.0%로 한다.
 - ② 대내투자활성화 촉진
(목표) 2018년까지 적어도 총 470건(대형투자안건 60건 포함)의 JETRO에 의한 외국기업유치를 목표로 한다.
- (2) 지역의 '수입창출력' 강화
 - ① 지역에 관한 정보발신
(목표) 방일 외국인여행자수가 2000만 명에 되는 해에 외국인관광객에 의한 여행소비액 4조 엔을 목표로 한다.
 - ② 지역 자원의 결집·브랜드화
(목표) 지원대상사업에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적절한 PDCA사이클 확립을 구하여 2010년도에 100% 확립을 목표로 한다.

[출처: 일본정부 내각관방 TPP정부대책본부 '종합적인 TPP관련 정책대강(안)']